

# 사단법인 지구행동 정관

2023. 10. 16. 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지구행동”(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회는 기후위기 등 오늘날 당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입법, 행정, 거버넌스 경험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고유한 지속가능발전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개도국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회의 입법 및 예산에 관한 연구 및 지원
2. 지속가능발전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개발 사업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및 외부 활동 지원
4.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캠페인 활동
6.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컨설팅 및 지원 사업
7.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 협력 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되 이사장은 반드시 등기이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비등기이사는 30인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다.

4. 감사 1인

####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비등기 임원은 이사회에 결정으로 임명한다.

####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비등기이사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장 총회

#####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7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연간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 의결로 이사 중 1인 이상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비등기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10. 상임이사 지명에 관한 의결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0조(예산편성)

본회의 수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3조(회계의 공개)

-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 제34조(임원의 보수)

1.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부서

### 제35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보 칙

### 제38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3년 10월 16일

발기인 (대표) 김은경 (인)

발기인 김종익 (인)

발기인 황순원 (인)

발기인 양원호 (인)